

의안번호	2220700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6.8.25.
추 계 번호	26B41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9조(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제1항) 8. 야간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의무규정
2	안 제39조의2(야간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신설	사업주는 야간작업(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1항) 1.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1주 단위로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당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2주 단위로 평균하여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야간작업의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4. 연속 야간작업 일수는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속하여 3일을 야간작업한 경우에는 제3호의 11시간에 더하여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6. 1개월의 기간 동안 야간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별 야간작업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제2항)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의무·재량 규정 의무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	의무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본다.(제5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9조(보건조치)	—	• 미대상 – 개정안은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야간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39조의2(야간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야간작업¹⁾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²⁾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³⁾을 실시하여 그 결과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사업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야간작업자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확대될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규모와 야간작업과 관련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주기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
 - － (사업대상자 수)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로 세부적인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장래에 발생할 특수건강진단 대상 야간작업자의 규모와 수검인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1) 야간작업이란, 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말함
- 2)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1주 단위로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당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2주 단위로 평균하여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야간작업의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4. 연속 야간작업 일수는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속하여 3일을 야간작업한 경우에는 제3호의 11시간에 더하여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6. 1개월의 기간 동안 야간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별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화학인자 노출 근로자 6개월, 석면 분진 노출 근로자 12개월, 소음 및 광물성·목재 분진 노출 근로자 24개월 등으로 상이하며,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장래에 발생할 야간작업과 관련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표] 특수건강진단의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먼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